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요양보호사 시험 부정행위 제재〉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4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12개월 범위에서 응시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생략)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 ----- ----- ----- ----- -----자 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 다)-----.
<신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④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

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
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
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응시를 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⑤ -----
자격시험-----

-----.

-----.

⑥ -----
자격시험-----

-----.

⑦ -----자

<u>양보호사 자격시험</u>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u>제3항</u>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u>제6항</u>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2의2. <u>제39조의2제6항</u>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의3. <u>제39조의2제7항</u>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 ~ 6. (생략)	<u>격시험</u>----- ----- -----. ⑧ <u>제5항</u>----- ----- ----- -----. ⑨ -----<u>제8항</u>----- ----- -----. 제57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u>제39조의2제8항</u>----- ----- ----- 2의3. <u>제39조의2제9항</u>----- ----- ----- 3. ~ 6. (현행과 같음)
--	---

□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임.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규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u>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u>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u>

□ 그런데 요양보호사 업무의 성격,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경우에 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 시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응시를 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격시험의 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로 판단됨.

□ 현재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에게 추가적인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하여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예

방적 효과와 부정행위의 수단과 위반 정도가 커서 국가자격 시험의 신뢰를 훼손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재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상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횟수 제한(예: 3회)보다는 기간 제한(12개월)이 실효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은 자격시험 응시제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입법례에 따라서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임입법의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법률	자격	조항	위임
의료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대 통 령 령
간호법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민영양 관리법	영양사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u>보건복지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부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u>보건복지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99